H - 5 - 2021

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직장 내 관리지침

2021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윤경
- 제·개정 경과
  - 2010년 10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 -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법령 및 규격 최신화)
- 관련규격 및 자료
  - 일본 후생노동성. 「사업자, 직장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」. 2009
  - 노동부, 보건복지가족부, 질병관리본부. 「2009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수립 매뉴얼」. 2009
  - Canadian center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. Business continuity plan-infectious diseases. 2009
  -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. Guidance on preparing workplaces for an influenza pandemic. OSHA Publication No. 3327-05R. 2009
  - U.K. Department of Health, National Health Service. Pandemic flu; guidance for business. 2009
  - U.S. Department of Health & Human Services.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, response, and recovery guid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key resources. 2009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http://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인플루엔자 대유행시의 직장 내 관리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직장 내 공기매개감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전염예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, 대유행 경향을 보인 인플루엔자 감염의 전파로 인해 대규모 결근 및 휴무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직장 내 업무지속계획을 고려할 수있는 보건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시, 사업장에 아직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부터 다수 발생한 시점까지 보건의료업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수한 직장이 아닌 일반인구집단과 전염의 위험이 유사한 일반 직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인플루엔자(Influenza)"란 독감으로 알려진 유행성 호흡기질환의 하나로 그 주요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A 및 B의 감염과 그 병발증을 말한다.
  - (나) "대유행(Pandemic)"이란 전염병의 유행성 전염과 발생이 지역과 인종의 구분을 넘어 전체 인구집단으로 발산되는 현상을 말한다.
  - (다) "업무지속계획(Business continuity planning)"이란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경

H - 5 - 2021

영상 기획과 운영계획을 말한다.

- (라) "비상대책위원회"란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인한 대규모의 결근이나 휴무에 대비해 업무지속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조직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한 「의학용어집」 제5 판(2009년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직장 내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관리지침

4.1. 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교육 실시

근로자의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염 및 전염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주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(1) 근로자들이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(표 1)을 숙지하여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 날 경우 직장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다.

#### <표 1>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

발열, 오한, 두통, 상기도 증상(기침, 인후통, 콧물, 호흡곤란), 근육통, 관절통, 피로감, 구토 혹은 설사 등의 증상

- (2) 근로자들에게 인플루엔자의 전염경로, 즉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을 이해시켜 손씻기와 기침 예절(별첨 1) 등 접촉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게끔 교육을 실시한다.
- 4.2. 인플루엔자의 전염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
  - (1)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사업장 외부로부터의 전염을 예방하

H - 5 - 2021

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피하도록 교육한다.

- (2) 근로자들이 기침 등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발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한다.
- 4.3. 인플루엔자 대유행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

직장 내 근로환경으로 인한 전염을 예방하고, 근로자의 개인수준에서 감염 및 전염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직장 내 인플루엔자 감염 및 전염 관리를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.

(1) 매일 적절한 소독제(표 2)로 청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현관의 손잡이 나 방문자용 화장실은 자주 청소한다.

<표 2>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 및 특징

살균 소독제	권장 사용법	주의점
차아염소산 나트륨	혈액과 체액으로	•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
(Sodium Hypochlorite)	오염된 물건 소독할	•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하는
: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	때 사용	경우 보호구 착용
과립형 염소	액체 소독약을 사	·염소 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
	용할 수 없을 때 희	므로 강산(염산 등)과 혼합금지
(Granular Chlorine)	석하여 사용	·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
이소프로필 알코올	눈에 보이는 오염	· 가연성, 독성 있음
(Isopropyl Alcohol)	물이 없거나, 살균	•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
:이소프로필 70%, 에탄올	소독제를 사용할 수	·흡입 주의 ·화기, 전자제품, 불꽃, 뜨거운
60% 등 알콜 성분 소독제	없는 테이블 등 부	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
	드러운 표면에 사용	·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
비누 및 기타 세정제	손 또는 부드러운	·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
:항생제 및 비 항생제 비누	표면에 사용	· 시장 구 박도 신도시점

(2)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회의실 등에는 손소독제와 재채기를 가릴 수 있는 일회용 휴지를 비치하고, 호흡기 비말이 묻은 쓰레기들을 자주 비운다.

H - 5 - 2021

- (3) 근로자가 호흡기 비말의 전파를 막기 위해 요청하거나,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근로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활용하도록 표준 의료용 마스크를 비 치하고 제공한다.
- (4) 건강관리실이나 출입구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하고, 일반적인 인 플루엔자의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의 실, 화장실, 출입구 등에 전시할 수 있다.
- (5) 사업주는 임산부, 만성질환자, 고령근로자 등 근로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인플루 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, 접종 대상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과 접종 후 합병증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도록 권유한다.

#### 5. 직장 내 인플루엔자의 단계별 관리방안

- 5.1. 직장 내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
  - (1) 직장 내 근로자들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대한 예비조치

사회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 내에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근로자가 없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인플루엔 자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주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.

- (가) 근로자들이 휴무 및 결근하는 경우 그 사유를 관리자나 부서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게 특히 병가를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반드시 증상을 확인한다.
- (나) 사업장의 관리자는 인플루엔자를 의심받거나 확진을 받은 근로자들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.
- (다) 출근 시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37.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(표 1)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

H - 5 - 2021

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.

(2) 직장 내 방문자 및 고객으로부터의 전염 관리

사업주 및 관리자와 건강관리 담당자는 외부로부터 사업장으로 들어온 방문자나 고객들이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잠재적인 전염원이 될 위험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.

- (가) 방문자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여 검사한다.
- (나) 방문자가 사업장에 들어올 때에는 개인 연락처를 사업장에 등록하고 추후 인 플루엔자에 감염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전염경로의 역추적에 협조하도록 조치 한다.
- (다) 방문자 대기실이나 외부 식당, 회의실, 방문자용 화장실 등은 손소독제와 일회 용 휴지를 비치하고 소독제로 자주 청소한다.

#### 5.2.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소수로 확인된 경우

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관리자 및 전염 관련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.

- (1) 직장 내 부서 관리자 및 직원 건강관리 담당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체온 측정 과 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(표 1)을 점검한다. 해당 증상이 있거나 근로자 개인 이 원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다.
- (2) 근로자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고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.
- (3) 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(표 1)을 호소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로 확진된

H - 5 - 2021

근로자 및 방문자로부터 접촉한 근로자에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동 안 매일 체온을 측정하며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.

- (4) 직장 내에서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근로자 및 방문자는 즉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플루엔자의 확진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조치한다.
- (5) 인플루엔자 확진 후 휴무 및 결근에 있어 적절한 기간은 근로자와 담당자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나, 가능하면 잠복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계획한다.
- (6)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근로자가 발생한 장소는 소독제로 청소한다.
- 5.3.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다수 발견된 경우
  - (1) 사업주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대유행 관리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, 특히 집단 발생이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안내를 확인한다.
  - (2) 사업주는 사업장 전염관리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잦은 결근에 대비하여 업무지속계획 운영을 고려한다.

#### 6. 업무지속계획의 기획과 운영

- 6.1 업무지속계획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  - (1) 사업주는 사업장의 전염 예방과 업무지속계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으로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   - (가) 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주변의 의료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을 대표하여 국내외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.
    - (나) 위원회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결근의 대체나 지원 업무들과 근로자들

H - 5 - 2021

- 의 전염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나누어 역할을 분담시킨다.
- (가)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각 부서별 책임자에 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다.
- (나) 부서별 책임자들은 해당 부서에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한다.
- (다)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위원회에 의사를 참여시켜 의학적 자문을 받도록 한다.
- (라) 운영지원부서는 대유행에 대비하여 고객 및 영업부서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물류관리부서를 구성한다.
- (마) 보건관리부서(또는 환경안전부서)는 직원 및 방문자의 감염을 관리하고 직원이 감염을 치료한 후 작업에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를 얻어 추적 관찰한다.
- (바) 위원회는 복구지원부서를 구성하여 결근 인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조달하며 결근 직원의 휴무 및 업 무 복귀 등을 검토할 수 있다.
- (3)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사업장에서도 다수의 직원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염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.
- (가) 잠재적인 직장 내 전염위험에 대비하여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기 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외부 출장을 자제한다.
- (나) 직장에서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는 집결 시간을 조정하는데, 예를 들면 식 당의 배식시간이나 직원 숙소 이용시간을 조정한다.

H - 5 - 2021

(다)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 중 인구가 밀집되는 시간에 노출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 시차를 둔다.

#### 6.2 중요 업무의 선택과 비상대책 수립

- (1) 대유행으로 인한 결근이나 휴무가 증가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중요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연기하는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한다.
- (2) 사업주는 근로자 결근, 일부 사업의 중단, 거래처 업무 중단에 대비하여 대체 생산, 배송 방안 등 재무대책과 대체 인력의 관리대책을 수립한다.

H - 5 - 2021

### <별첨 1>

# 개인 위생 관리

## ● 손씻기운동본부가 추천하는 올바른 손씻기 6단계



1.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.



2.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 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.



3. <u>손가락등을</u> 반대편 손바 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.



4.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.



5.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 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.



6.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 고 문질러 줍니다.

# ● 기침 에티켓
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음
-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
-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림
- 호흡기 분비물,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음